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35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김 정 호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01335 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축물 설계·감리 시 협력대상인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사 추가(안 제67조제1항제1호)	2

I.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제220133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7. 3.

다. 회 부 일 : 2024. 7.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호).

3. 검토의견

가. 건축물 설계·감리 시 협력대상인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 추가(안 제6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별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 ----- ----- ----- ----- ----- ----- ----- ----- -----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1. <u>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서 「기술사법」</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축법」 제67조제1항1)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감리 시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의무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임.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감리 시 설계자와 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설계자 및 감리자가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건축물의 설계와 내실 있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1)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별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됨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복잡·다양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사’는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계자 및 감리자²⁾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고,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감리 시 의무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대상에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감리를 통하여 건축물 완공 이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해킹 등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1년 11월 전국 아파트 단지의 거실 벽면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되어 입주민의 사생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³⁾

2) 현행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음.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홈게이트웨이 등의 보안 설비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되었음.

아울러, 건축과 정보통신 분야는 별도의 분야로서 발전했고, 정보통신 기술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건축법」에 특정분야를 명시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사의 수가 전체 건축물 인·허가 건수 대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 건축주의 추가 비용 부담 등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홈네트워크망

가. 단지망

나.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나. 세대단말기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제9조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4)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해당 기술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할 경우 체계상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排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 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585